

#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10. 6.

제출자 : 서초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(2000년 시행)으로 변경된 내용의 반영과 과세표준 심의위원회의 신설을 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가. “납세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”를 “납세증명서”로 변경

나.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변경

- 동위원회의 기능을(현행)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·의결하고 기타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을 심의(변경)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·의결
-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및 동시행규칙 제39조를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

다.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신설

-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함
-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및 동시행규칙 제39조를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세법 제3조(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라. 규제심사 : 심사대상 아님

마. 입법예고 : 서울특별시서초구 공고 제 407호

바. 기타사항 : 신·구조문 대비표 별첨

##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 제 호

**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6조의2** 제목 “(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사무의 위임)”을 “(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 위임)”으로 하고, 동조본문중 “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”를 “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”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14조 (지방세심의위원회)** 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세심의위원회(이하 “지방세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14조의3 (과세표준심의위원회)**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(이하 “과세표준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“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”와 “과세표준분과위원회”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한 “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세심의위원회”와 “서울특별시서초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”로 본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형 행	개 정 안
<p>제6조의2(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사무의 위임)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.</p> <p>제14조(지방세심의위원회) 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·의결하고 기타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위원회의 안건을 부장·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세제분과위원회·지방세심사 청구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.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.</p> <p>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. 각 분과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④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재무국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된 1인으로 하며,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과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.</p>	<p>제 6조의2(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 위임)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</p> <p>제 14조(지방세심의위원회) 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(이하 "지방세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1. 판사·검사·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</p> <p>2.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</p> <p>4. 대학에서 법률학·회계학 또는 부동산 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</p> <p>5.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p> <p>⑤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자의 임기 간으로 한다.</p> <p>⑥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⑦ 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4조의3(과세표준심의위원회)      ①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(이하 "과세표준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</p> <p>②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